

1. 개정이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함)(법률 제19524호, 2023. 7. 11. 공포, 2024. 1. 12. 시행)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 관련 변경승인 및 변경신고 사항 (안 제2조)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른 수익사업 변경신고 제도의 신설을 고려하여 변경승인 제도를 정비하고, 수익사업의 사업장 이전 등 변경신고 사항을 규정함

나.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안 제4조의2)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른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제도에 대한 절차를 마련함

다. 재무·회계에 관한 기준(안 제8조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 운영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라. 외부회계감사 절차 및 감사 기준(안 제8조의3)

법 제16조의9에 따른 외부회계감사 대상 및 기한, 감사 기준을 규정함

마. 실태조사(안 제8조의4)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0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에 대해 규정함

바. 정보공개(안 제8조의5)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의 명칭, 승인을 받은 업종 또는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등 법 제16조의11에 따른 정보공개 사항에 대해 규정함

사.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안 제9조 및 별표)

법 제16조의12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취소 또는 정지 처분에 관한 세부기준을 마련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3건()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으로 한다.

제2조의 제목 “(수익사업의 승인대상 등)”을 “(수익사업의 승인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는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를 “가 법 제1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을 승인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 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1항제4호를 제5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제4조제1항제5호(종전의 제4호) 중 “제3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를 “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제2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

4.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③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중

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재향군인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제5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5조제2항 중 “제3조제1호의 승인기준을 갖춘”을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법 제4조의6”을 “법 제16조의12”로 한다. 제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4조의4제1항”을 “법 제16조의6제1항”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법 제4조의5제3항”을 “법 제16조의7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법 제4조의4제6항”을 “법 제16조의6제6항”으로 한다.

제8조의2부터 제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재무·회계에 관한 기준) ① 재향군인회의 재무·회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재향군인회의 수입·지출의 발생 및 자산·부채의 증감·변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 1회계연도에 속하는 재향군인회의 수입·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⑤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고유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복식부기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하는 내용 이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차,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준예산, 예비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전용, 적립금의 적립, 결산 보고, 수입 및 지출 사무의 관리, 수입·지출의 집행기관, 수입금의 수납, 지출의 원칙, 지출의 방법,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훈 관련 단체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한다.

제8조의3(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재향군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9제1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재향군인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4(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

할 수 있다.

제8조의5(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재향군인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제9조의 제목 “(수익사업 승인의 취소)”를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

부터 1개월을 말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의2서식 및 별지 제4호의3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제9조제1항 관련)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행정처분 기준 적용일은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일과 그 처분 후에 한 위반행위가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행정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행정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다만,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되는 날 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 다.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모두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각 처분기준을 더한 기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무거운 처분기준에 각각 나머지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한다.
- 라.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내용·횟수 및 위반 정도 등이 다음의 가중 사유 또는 감경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처분이 정지 처분인 경우에는 그 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고, 승인 취소(제2호가목·나목 및 마목은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6개월의 정지 처분으로 감경할 수 있다.

1) 가중 사유

- 가)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한 경우
-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심각한 경우
-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감경 사유

- 가)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나) 위반행위로 인한 수익사업 운영질서의 훼손이 경미한 경우
- 다) 위반행위의 재발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마. 처분권자는 제2호(가목·나목·다목·마목·아목·카목·타목·파목 및 하목은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재향군인회가 법 제17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16조의4제1항·제2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승인·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1호	승인취소			
나.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폐지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2호	승인취소			
다.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승인받은 수익사업을 2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3호	승인취소			
라.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4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마. 법 제1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재향군인회의 명의를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5호	승인취소			
바. 법 제16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정기 감사를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6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사.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7호	정지 2개월	정지 4개월	정지 6개월	승인 취소
아. 법 제17조에 따른 시정조치에	법 제16조의12	정지	정지	정지	승인

따르지 아니한 경우	제1항 제8호	2개월	4개월	6개월	취소
자.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조사·검사를 거부하거나 방 해·기피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9호	정지	정지	정지	승인 취소
차. 법 제18조에 따른 보고 또는 서류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나 자료를 제출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10호	정지	정지	정지	승인 취소
카. 수익사업의 정지 기간 중에 수익 사업을 운영한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11호	승인취소			
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12호	정지	정지	승인취소	
파.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13호	정지	정지	승인취소	
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 하는 경우	법 제16조의12 제1항 제14호	정지	정지	승인취소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사업명(업종)		
	사업장 소재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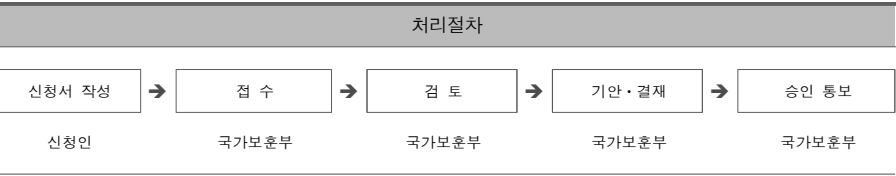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 사업장 소재지, 사업소 직원 현황 및 조직도 및 관련 설비 현황 - 사업 경영을 위한 자금 명세 및 자금 조달 방법 - 경영계획 및 수익금 사용계획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기준을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소재지			
신청내용	종전 수익사업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시기
		사업장 소재지		
	변경 수익사업 내용 등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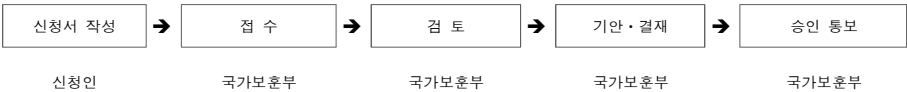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수수료 없음
	- 업종 및 품목 등의 변경 필요성	
	- 관련 조직 및 설비계획	
	- 자금조달 계획 및 향후 수익성 판단 등	
	- 추정손익계산서 및 부속 명세서	
	2.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1부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4.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		
5. 그 밖에 수익사업 변경승인과 관련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처리절차



수익사업 변경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신고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변경사항	①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 이전	
	②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변경	
	③ []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인력 규모의 변경	
변경내용	변경예정일	
	변경 내용	
	변경 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의 변경사항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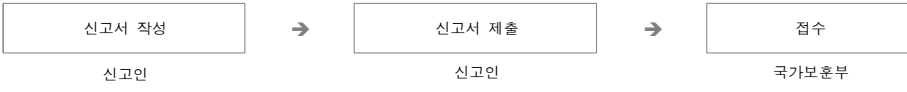
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제 호

수익사업 승인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승인내용:
5. 수익계약대상단체 여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 사업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단체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			전화번호		
	사업장 소재지					
신청내용	유효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수익사업의 내용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승인일자	승인번호	
		사업장 소재지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및 그 사유	유효기간 연장 신청기간				
		유효기간 연장 신청사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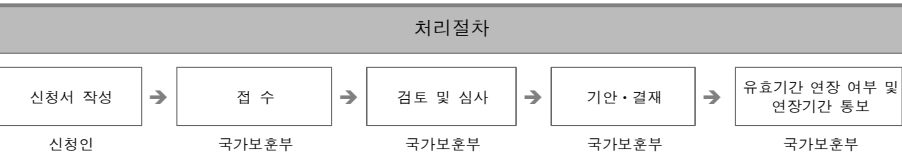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1. 별지 제2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2.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허가·면허·등록·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그 밖에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수수료 없음
------	--	--------



제 호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

1. 단 체 명: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수익사업명(업종 및 품목):
5. 승인일자: (승인번호:)
6. 사업장 소재지:
7. 유효기간 연장 기간: . . . ~ . . . (년 개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제16조의4제6항 및 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제6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제 호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1. 생 산 품 목:
2. 생산업체명:
3.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00000-0000000)
4. 대표자 성명:
5. 소재지(본사): (사업장):
6. 유효기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업체의 직접생산을 확인하여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국가보훈부장관 직인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대한민국재향군인회 수익사업에 관한 규칙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의 수익사업에 관하여 같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 ----- ----- ----- --.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대상 등) ①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른 대한민국재향군인회(이하 “재향군인회”라 한다)는 법 제4조의3 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을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모두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조(수익사업의 승인 등) ① -- ----- ----- -----가 법 제16조의4 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거나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 --.
1.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그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에 관한 사항	1.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운영과 관련된 시설 및 인력 현황 등을 포함한 사업계획. 다만, 변경승인은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려는 경우만 해당한

2. 제1호에 따른 수익사업의 신규 또는 추가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주요 승인사항”이란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의 사용계획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승인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이전하려는 경우 2.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시설을 변경하거나 인력 규모를 변경하려는 경우 제2조의2(수익사업의 승인 조건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4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하거나 변경사항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 수익사업 관련 단체 간의 과잉경쟁 방지 및 수익사업의 운영질서 훼손 예방 등을 위해 그 승인 또는 변경승인에 필요한 조건 등의 부관(이하 “승인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신 설>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4조의3제1	제3조(수익사업의 승인기준) 별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

항 전단에 따라 재향군인회가 운영하려는 수익사업이 다음 각 호의 승인기준 모두를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수익사업을 승인한다.

1. 재향군인회가 직접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일 것

가.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조달청장이 정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

나. 재향군인회가 기술 및 인력 등을 보유하고 용역 또는 서비스 등(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을 직접 수행하여 제공하는 수익사업

2. 재향군인회의 자금조달 능력, 사업수행 능력 및 투자규모, 수익사업 운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재향군인회가 수행하기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업종 및 품목일 것

3. 수익사업의 수익금이 재향군인회의 설립 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것으로 해당 수익금 사용계획에 반영되어 있을 것

업을 승인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승인기준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조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직접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재향군인회가 직접 물품을 생산하는 수익사업일 것

2.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술 및 인력 등을 갖추어 용역 또는 서비스(이하 “용역 등”이라 한다)를 직접 제공하는 수익사업일 것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재향군인회는 법 제4조의3제1항 전단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 3. (생략)

<신설>

4. 그 밖에 수익사업 승인과 관련하여 제3조에 따른 승인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재향군인회는 법 제4조의3제1항 후단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 1부

제4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에 관한 서류

5. -----
----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

② 법 제16조의4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 변경계획서(제2조제1항 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

2. 3. (생략) <u><신설></u> 4. (생략) <u><신설></u> ③ 국가보훈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신청 또는 수익사업의 변경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 또는 변경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재향군인회에 그 결정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국가보훈부장관은 제3항에	<u>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부</u> 2. 3. (현행과 같음) 4. <u>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된 수익금 사용계획 변경에 관한 서류(제2조제1항제2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u> 5. (현행 제4항과 같음) ③ <u>법 제16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승인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재향군인회는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변경신고서를 포함한다)에 제2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변경예정일 전까지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④ ----- ----- -- 또는 ----- ----- ----- ----- -----. ⑤ ----- 제4항-----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하여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승인한 수익사업의 회계감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해당 수익사업 운영 단체”를 “재향군인회”로 본다. <u><신설></u>	----- ----- ----- ----- ----- ----- -----. <u><삭제></u> <u>제4조의2(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①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재향군인회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연장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u> 1.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	---	--	---

서류

2. 그 밖에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1.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 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16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③ 법 제16조의4제6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재향군인회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

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⑥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재향군인회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의3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서를 발급해야 한다.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u>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 승인을 받은 재향군인회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u>		를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제5조(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 ①		제6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u>법 제4조의4제1항에 따른 복지사업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 위원</u>	제6조(복지사업심의위원회의 임기 등) ① <u>법 제16조의6제1항-</u>
재향군인회는 직접 생산하는 물품이나 직접 수행하는 용역등에 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직접생산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	----- ----- ----- ----- -----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경쟁제품은 직접생산 확인 신청 대상에서 제외한다.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 ----- ----- ----- ----- .
<u><단서 신설></u>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제7조(심의위원회의 운영) ①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심의위원회는 <u>법 제4조의5제3항에 따라 심의·의결한 결과</u>	④ ----- <u>법 제16조의7제3항-</u>
			를 지체 없이 재향군인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 -----.
			⑤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재향군인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u><단서 신설></u>	⑤ ----- ----- ----- --.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u>제3조제1호의 승인 기준을 갖춘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u> 를 발급해야 한다.	② ----- ----- ----- <u>법 제16조의4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u>		⑥·⑦ (생 략)	⑥·⑦ (현행과 같음)
③ 재향군인회는 <u>법 제4조의6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직접생산 확인증명서</u>	③ ----- <u>법 제16조의12</u>		제8조(재심의 요구 등) ① 재향군인회는 제7조제4항에 따라 통보 받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결과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u>법 제4조의4제6항</u>	제8조(재심의 요구 등) ① ----- ----- ----- ----- ----- <u>법 제16조의6제6항</u>

단서에 따라 그 통보를 받은 날
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의 요구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재심의
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
심의 요구 사항에 대한 심의·
의결에 관하여는 제7조제2항부
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
다.

② ~ ④ (생략)

<신설>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의2(재무·회계에 관한 기
준) ① 재향군인회의 재무·회
계는 그 설립 목적에 따라 건전
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② 재향군인회의 회계연도는 정
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③ 재향군인회의 수입·지출의
발생 및 자산·부채의 증감·변
동에 관하여는 그 원인이 되는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
다. 다만, 그 사실이 발생한 날
을 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회계연도 소속을 구분한다
④ 1회계연도에 속하는 보훈 관
련 단체의 수입·지출의 출납은
해당 회계연도가 끝나는 날까지
완결해야 한다.
⑤ 재향군인회의 회계는 고유목

<신설>

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며 복식부기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정
하는 내용 이외에 예산총계주의
원칙, 예산의 편성 및 결정 절
차, 예산에 첨부해야 할 서류,
준예산, 예비비,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예산의 전용, 적립금
의 적립, 결산 보고, 수입 및 지
출 사무의 관리, 수입·지출의
집행기관, 수입금의 수납, 지출
의 원칙, 지출의 방법, 감사에
관한 사항은 「보훈 관련 단체
의 재무·회계에 관한 규칙」
제10조부터 제24조까지를 준용
한다.

제8조의3(회계감사 대상사업 등)

① 재향군인회는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법 제16
조의9제1항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9제1항에서 “국
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일정 규
모 이상의 수익사업”이란 전년
도의 연간 매출액이 20억원 이
상인 수익사업을 말한다.
③ 법 제16의9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이하 “공인회계
기관”이라 한다)은 같은 조 제2

<신 설>

항에 따라 재향군인회로부터 회계감사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회계감사를 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20일의 범위에서 회계감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회계감사 기준에 따라 감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4(실태조사) ① 법 제16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
· 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 제2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 법 제16조의4제3항 및 이 규칙 제3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 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내역
 5. 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 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

<신 설>

제9조(수익사업 승인의 취소) 법 제4조의6제6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법령을 위반한 경우”란 재향군인회가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면조사,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의5(정보공개) ① 국가보훈부장관은 법 제16조의11제1항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를 국가보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개해야 한다.

② 법 제16조의11제1항제3호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재향군인회의 명칭,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 사업장 소재지, 승인의 유효기간
2.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 내역

제9조(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6조의12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받은 경우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신 설>	② 국가보훈부장관이 법 제16조의12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에 관하여 체결한 계약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를 할 때에 해당 처분의 처분서에 계속 수행할 수 있는 계약의 내용을 적어야 한다. ③ 법 제16조의12제3항에서 “국가보훈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1개월을 말한다.		작성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결산보고서(재무상태표와 손익계산서 포함) 2. 법 제4조의3제3항에서 준용하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공인회계기관의 회계감사 결과 보고서 3. 그 밖에 수익사업의 실적 확인에 필요한 서류로서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4. 삭제	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0조(수익사업 실적 보고) 재향군인회는 승인을 받은 수익사업에 대하여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150일 이내에 수익사업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10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보훈부장관은 제8조의4에 따른 실태조사, 제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른 수익사업의 정지 또는 승인 취소 처분의 세부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			